



삼일회계법인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및 금융회사 준비 방향

Sustainability Platform

2026.3



Contents

1.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배경 및 현황	3p
2.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방안	4p
2-1. 2035 NDC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4p
2-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5p
2-3.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7p
3. 기후금융 활성화 준비 방향	9p

1.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배경 및 현황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2035 NDC¹ 상향²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 K-GX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 기후금융이란?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전환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며, 관련 데이터·평가체계 등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³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배경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의 가속화	탄소규제의 무역 장벽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실물경제의 녹색전환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
2030 대비 강화된 2035 NDC 수립 등 국제 사회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지속	'26년 CBAM*의 본격 가동 등으로 저탄소 공정전환이 수출경쟁력과 직결된 생존과제로 부상	'25.11월 2035 NDC 상향 설정, 국가 인프라의 저탄소 구조 재편을 위한 K-GX 전략 마련에 총력	기후금융은 산업 구조의 혁신 및 기술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로 수입되는 탄소 배출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 실물경제의 생산능력 확충과 지속가능·포용성장에 기여하는 금융으로, 자금을 혁신·인프라·녹색전환 등 장기생산성 기반에 투입하는 역할

기후금융 추진 현황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24.3월)을 통해 ‘24~’30년간 총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 수립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를 추진 중이며, 대규모 자금의 그린워싱 우려해소를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환경부·금융위)」, 「녹색여신 관리지침(금융위·환경부·금감원)」 등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제도적 기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CBAM 등 국제 규제 저탄소 전환	RE100 등 자발적 규제 청정에너지 사용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 지원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저탄소 공정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신산업 육성
'30년까지 기후금융 420조 원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30년까지 9조원)	기후기술펀드 ('30년까지 3조원)

¹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² 2030 NDC: '30년까지 40% 감축('18년 대비) → 2035 NDC: '35년까지 53~61% 감축
³ 금융위원회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2024.12.12)

2.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방안

금융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외연 확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 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비전	목표	추진과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선도국가 도약	1. 양적 확대: 실물경제의 K-GX 가속화 지원 등 친환경·전환 부문 자금공급 확대 2. 외연 확장: 고탄소 산업의 현실적 녹색전환을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3. 역량 강화: 신뢰성·효율성을 담보하는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1. 기후금융(녹색+전환)의 양적 확대 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3.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2-1 2035 NDC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기후금융 확대 필요성

2025년 11월 정부의 강화된 2035 NDC 확정·발표에 따라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혁신 요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바,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금융(녹색+전환) 양적 확대 기본 방향

금융위원회는 상향된 NDC에 맞추어 기후금융(녹색+전환) 공급계획을 79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 NDC	2035 NDC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40%	53~61%
NDC 달성을 위한 기후정책금융 공급액	'24~'30년(7년간) 420조원	'26~'35년(10년간) 790조원

- 녹색분야(Green)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전환금융(Transition)** 추가
- 신규 공급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

2-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전환금융 개념 및 필요성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탄소 다배출 산업과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녹색금융 적용이 제한적인 고탄소 업종의 탄소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색금융	전환금융
대상 기업	친환경 기업·프로젝트 (태양광, 전기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사례	태양광 패널 설치자금 대출, 친환경 건물 건축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등	제철소의 공정전환(석탄→수소)을 위한 전환채권 발행, 정유공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출 등
비유	친환경 '녹색' 산업 지원	非녹색 산업의 지속가능한 변화 (적색→갈색→녹색) 지원
주요 목적	친환경 산업의 육성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전환금융을 도입한 EU(택소노미 활용), 싱가포르(多부문 택소노미 활용), 일본(감축로드맵 활용)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탄소 업종의 점진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환금융 정의

파리협정 목표⁴와 6대 환경목표⁵ 달성에 기여하는 설비교체·R&D 등에 공급되는 금융

판단 기준

- ① **녹색분류체계 연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판단기준(활동·인정·배제·보호 4가지) 중 일부만 충족하더라도(유예기간內) '녹색금융 前단계'로서 전환금융 인정
- ② **탄소감축로드맵 기준:** 다배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기업 감축노력의 로드맵 부합여부 확인
 - 정부 등*의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전환경로를 채택하거나
 - 기업의 자체 전환계획이 파리협정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 '26년 중 주요 고탄소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마련 예정(산업부)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채권 및 주식·투자상품을 모두 포함하되, 취급가능 상품은 업권별 법규를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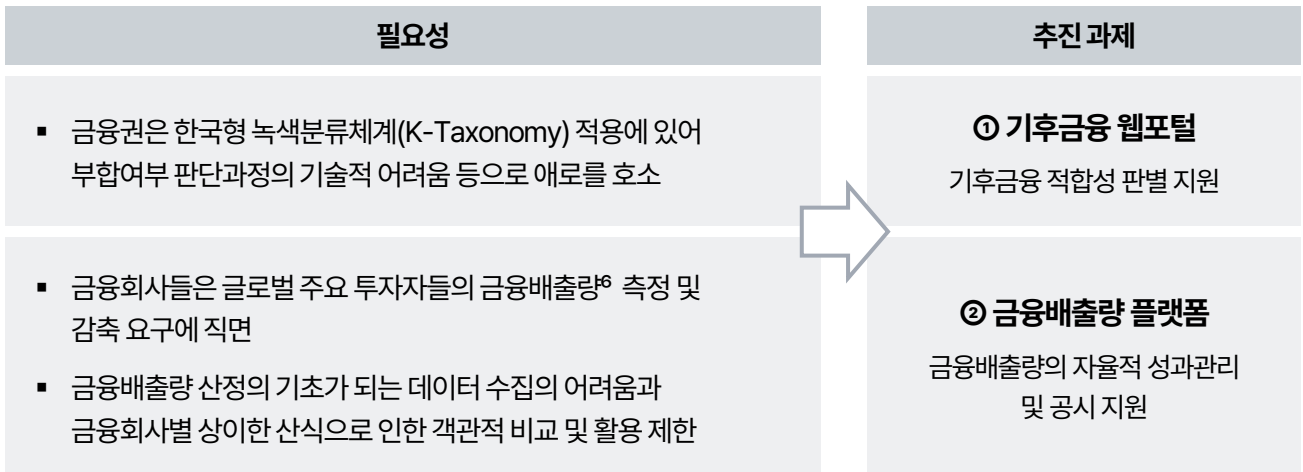
* 전환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종투자·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여전사, 금융지주사

⁴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C, 나아가 1.5°C 이하로 억제

⁵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방지, 6) 생물다양성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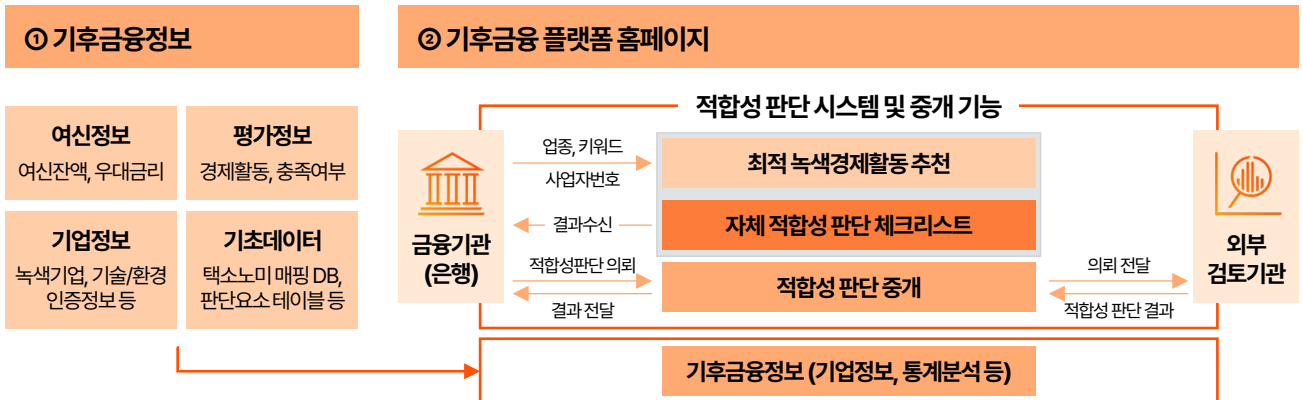
2-3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필요성



기후금융 웹포털 주요 내용

신용정보원에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하여 소금융권이 자율 활용할 수 있는 기후금융DB와 표준 적합성 판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기후금융(녹색·전환금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정보 외에 탄소배출량 녹색인증 현황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현황 등 기업의 친환경 활동 관련 정보를 집적
기후금융(녹색·전환금융) 적합성 판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분류코드(KSIC)·프로젝트 개요 등 입력 시, K-Taxonomy에 따른 녹색금융 또는 전환금융 적합 여부와 대상기업을 추천 시범운영을 통해 업종별·프로젝트별 판별기준을 지속 수정·보강

⁶ 대출·투자 등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탄소배출량 (Scope3 해당)

금융배출량 플랫폼 주요 내용

신용정보원에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배출량 관리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보급합니다.

금융배출량 데이터 베이스 구축

- PCAF⁷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산을 7가지로 분류, 모든 자산군에 대한 배출량 파악
- 공시된 탄소배출량 및 탄소배출량 추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정보 등 기관별 산재된 데이터를 신용정보원에 집적
- 배출량 실측 데이터가 부재한 비상장·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뢰도 높은 추정치 제공

글로벌 기준 부합 표준 산식 및 계산값 제공

- 표준 산출식과 결과는 자율적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자율적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

⁷ 탄소회계금융연합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금융배출량의 측정·공개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하는 민간 협의체('25년 약 700개 이상 금융사가입)

3. 기후금융 활성화 준비 방향

① 기후금융 적용 기준 정립과 내부 거버넌스 구축

기후금융 활성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은 기후금융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기존 녹색금융 중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탄소 산업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을 통해 기후금융의 외연을 확장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명확히 구분하고,

- 어떤 활동은 녹색금융으로,
- 어떤 활동은 전환금융으로,
- 어떤 경우는 기후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의 연계 여부,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 전환 과정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일관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신·투자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린워싱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지원 인프라는 금융회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인 만큼, 개별 금융상품의 기후금융 적합성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금융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내부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립된 기후금융 적용 기준이 금융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기후금융은 단순한 ESG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인 만큼, 금융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중심으로 여신·투자부서, 리스크관리부서, ESG·지속가능금융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립된 기준에 따라 전환 가능성과 감축 경로를 종합적으로 판단·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금융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 이후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까지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부 거버넌스 체계는 감독당국 점검이나 그린워싱 논란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가 일관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㉔ 기후금융 심사 및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두 번째 과제는 기후금융 심사 및 데이터 관리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금융권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금융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부 인프라를 참고하되, 기후금융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판단 논리를 내부적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차주 및 투자대상의 탄소배출 현황, 감축 계획,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기후금융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여신·투자 프로세스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금융의 경우 단순한 현재 시점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감축 경로와 이행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정성적 정보와 정량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㉕ 금융배출량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세 번째 과제는 금융배출량과 기후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금융회사가 대출·투자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전환을 유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단순한 배출량 산정을 넘어,

- 자산군별 금융배출량 구조를 이해하고
- 고탄소 익스포저가 재무적 리스크로 전환되는 경로를 분석하며
- 감축 목표와 연계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금융배출량 정보는 단순한 공시 지표가 아니라, 기후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전략적인 자산 분배를 지원하는 핵심 관리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의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활용하되, 이를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경영 의사 결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배출량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는 향후 투자자 요구, 감독당국 정책, 기후 공시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핵심 프로세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규제 대응을 차원이 아닌 중장기 경영 전략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Sustainability Platform



김도연 Partner, Reporting & Assurance

02-709-4079 | kim.doyeon@pwc.com



박종철 Director, Reporting & Assurance

02-709-4715 | jong-cheol.park@pwc.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3W-RP-036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